

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(RFA) 및 부정맥의 냉각절제술의 급여기준

(고시 2023-228호를 종합하여 기술함. 작성일 2023-11-30)

1.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(Radiofrequency Ablation of Arrhythmia, RFA)-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(Conventional) 및 부정맥의 냉각절제술(Cryoablation of arrhythmia)은 부정맥의 근본적인 치료방법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,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행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.

- 다 음 -

가. 심방빈맥(Atrial Tachycardia)

증상이 있거나 지속성(incessant form)의 경우

나. 심실빈맥(Ventricular Tachycardia)

- | |
|---|
| 1) 증상이 있는 지속성의 경우 |
| 2) 증상이 있는 비지속성에서 약물에 반응하지 않거나 환자가 약물치료에 적응을 못한 경우 |

다. 심방세동(Atrial Fibrillation)

- | |
|---|
| 1) 항부정맥 약제(class I 또는 class III) 중 1가지 이상을 6주 이상 충분한 용량으로 투여한 이후에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심방세동으로, 약제 투여 전·후 심전도검사에서 심방세동이 증명된 경우 |
| 2) 약물치료에 실패하여 약제를 투여하지 못하거나, 항부정맥 약제에 대한 부작용 또는 동결절 기능부전을 동반한 빈맥-서맥 증후군(Tachycardia-Bradycardia Syndrome)에서와 같이 약제유지가 불가능한 심방세동으로서 심전도에 의해 확인된 경우 |
| 3) 재시술은 이전 시술 후 3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실시하되, 심전도 상 심방세동 또는 심방빈맥의 재발이 증명된 경우 |
| 4) 빈맥 유발성 심근병증의 가능성이 높은 심방세동 환자의 좌심실 기능 부전을 역전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경우 |
| 5) 심방세동 고주파절제술 또는 냉각절제술 시 CTI(cavotricuspid isthmus)-dependent 심방조동이 유도된 경우 |

라. 심실조기수축(Ventricular Premature Complexes)

- | |
|---|
| 1) 심실조기수축으로 인한 좌심실기능부전 환자로서 심구혈률(Ejection Fraction, EF)이 50% 이하이고, 2개월 이상의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, 2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시행한 24시간 홀터기록 상 심실기외수축의 부담이 15% 이상인 경우 |
| 2) 심장재동기화치료(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, CRT)를 받은 환자에서 2개월 이상의 |

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, 홀터기록 상 심실기외수축의 부담이 10% 이상인 경우
3) 증상을 일으키는 빈번한 심실조기수축환자로서 홀터기록 상 심실기외수축의 부담이 15% 이상인 아래와 같은 경우
- 아 래 -
가) 2개월 이상의 약물치료 후
나) 약물치료에 실패하여 약제투여를 못하는 경우
4) 심실조기수축(Ventricular Premature Complexes, VPC)이 다형성심실빈맥이나 심실세동을 유발하는 경우

- 마. 심방조동(Atrial Flutter) 증상이 있거나 지속성(incessant form)의 경우
- 바. 증상이 있는 부전도로(accessory pathway)에 의한 빈맥 또는 방실결절재진입 빈맥(Atrioventricular Nodal Reentry Tachycardia, AVNRT)
- 사. 무증상의 조기흥분(pre-excitation)

1) 심방세동시 심실조기 흥분된 RR간격이 250ms 이하인 경우
2) 다수의 부전도로가 존재하는 경우
3) 부전도로의 불응기가 240ms 미만인 경우
4) 타인의 생명을 책임지는 직업(비행기 조종사, 대중교통 운전사 등), 운동선수

- 아. 심방세동의 '주2' '냉각풍선절제술'은 위 1. 다. 심방세동 중에서 1)~4)에 요양급여함.
- 자. 위 가.~아. 이외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(Conventional) 또는 냉각절제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진료 내역 및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요양급여함.

2. 삼차원(3-D)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(Through Intracardiac Electrophysiologic 3-Dimensional Mapping)은 위 1.의 급여기준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하며,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위해 실시한 영상진단(CT, MRI)은 별도 요양급여함.

- 다 음 -

- 가. 위 1.의 가.~라.에 해당되는 경우
- 나. 위 1.의 마.에 해당되는 경우 중 비전형적 심방조동
- 다. 구조적 심장질환을 동반하여 발생한 부정맥
- 라. 부정맥고주파절제술(Conventional)로 불가능하거나 실패한 경우
- 마. 위 가.~라. 이외 삼차원 빈맥 지도화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례별로 요양급여함.